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주식회사 한섬

제1장 총 칙

제 1조(목 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한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의 내부거래위원 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구성, 권한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조(직무와 권한)

- 1. 위원회는 본 규정 제 1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.
- 2.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,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산정기준,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- 3.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,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, 수의계약 체결 사유 해당 여부,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발주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.
- 4.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4조(위원의 의무)

- 1.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2. 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2장 구성

제 5조(구 성)

- 1.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2. 위원회는 [4 인]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사외이사가 3 인 이상 포함되고, 위원총수의 [3분의 2]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
- 3.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- 4. 위원회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하고,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5.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·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
제 6조(위원장)

- 1. 위원회 위원장은 제 11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 중에 선정하여야한다. 단,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- 2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3.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4.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5.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선임위원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 조(해 임)

위원은 이사 총수의 [3 분의 2]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

제3장회의

제 8 조(종 류)

위원회는 [분기 1]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수시로 개최한다.

제 9조(소집권자)

- 1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6 조 제 5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2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[2 주일]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0 조(소집절차)

- 1.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 각자에 대하여 개최시기, 장소 및 안건을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.
- 2.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11 조(결의방법)

- 1.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- 2.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3.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2 조(부의사항)

1.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거래로서,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, 유가증권, 자산, 상품용역을 [50 억원] 이상 또는 회사의 자본총계, 자본금 중 큰 금액의 [5%] 이상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
- (2) (1)호 외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로서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
- (3)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사항
- 2.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(1) 분기별 계열사와의 자본시장법 제 160 조에 따른 분기보고서 상 내부거래 실적

제 13 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- 1.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2.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4 조(의사록)

- 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4장보 칙

제 15조(통지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6조(간사)

- 1.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2.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.

제 17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